

전기제품 표시용어의 한글화

1. 추진배경

정부에서는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공산품중 전기제품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기 전에 안전검사를 받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검사를 받지 않고는 제조 또는 수입이 불가능하며 불법으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부가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외국과의 관계를 전혀 무시하고 운영할 수는 없다. 동서냉전이 소멸된 이후 세계속의 경제화가 진전되고 국경 없는 무역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상품이 세계시장으로 수출되고 외국제품이 아무런 제한없이 국내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자유로운 상품의 교역은 소비자의 선택기회를 넓히고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한다. 국내기업에는 보다 좋은 제품을 만들도록 자극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외국제품에 대한 시장개방은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전기제품의 작동방법, 주의사항, 기능등이 외국어

로 표기되어서는 국내 소비자에게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식 수준의 향상과 소비자활동의 증가로 외국어 표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정부에서는 한글표기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2. 추진내용

가. 1차 한글표기안 제정

정부에서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한글표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많은 소비자가 사용하고 안전성이 요구되며 외국어표기가 심한 제품 35품목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관련업계와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한글표기안을 마련하여 '91년 11월 25일에 공고하였다. 35개 품목을 신규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92년 1월 1일부터, 이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92년 7월 1일부터 표기하여야 한다.

나. 2차 한글표기안 재정

1차 작업때의 경험을 토대로 2차 한글표기안은 보다 순조롭게 추진하였다. 1차 작

업에서 제외된 제품중 한글표기가 필요한 172개 품목을 선정하여 작업을 추진하였다. 관련업계와 문화부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표기안을 확정된 후 '92년 6월 10일에 공고하였다. 172개 품목은 신규로 형식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93년 1월 1일부터 이미 형식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93년 7월 1일부터 표기하여야 한다.

다. 주의사항 표시대상품목의 확대

전기용품이 위해의 우려가 높아 특별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히 주의사항은 누구나 알기쉽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주의사항 역시 외국어로 표기되어 있어 주의사항을 표시토록 한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주의사항 표시대상이 27품목으로 지극히 한정되어 있었다. 이를 제조구분별로 확대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였다.

3. 한글화의 효과 및 관리

전기제품의 표시용어를 한글로 표기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혜택이 있다. 우선 모든 사항이 한글로 적혀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주위사항 또는 작동법에 따라 사용함으로써 사고나 고장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각 부위가 한글로 쓰여 있기 때문에 제품의 사용이 쉬워지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외국어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익숙해질때까지 여러번 시험삼아 써 봐야 하지만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또한 제품에 내장된 각종 기능을 다양하게 활용하게 되어 이용도를 높일 수 있다.

공업진흥청에서는 이러한 잇점을 가진 한글표기가 제조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다.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소비자의 의견과 제조자의 의견을 들어 보완이 필요하거나 미비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 공업진흥청

4. 작동방법 및 기능의 한글화 실례 : 텔레비전 수상기의 경우

종 전	기 능 설 명	현행 한글표기
ADAPTER	110/220V 변환용 전원 PLUG	변 환 기
AFT	자동으로 FINE TUNING을 해줌	자동미세조정
AI	자동으로 영상, 음성을 설정해 줌	인 공 지 능
AM	오전표기	오 전
ANTENNA	안 테 나	안 테 나
AUDIO	텔레비전의 신호중 음성부분을 말함	음 성